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용어 변경 〉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79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용어 변경 ..... | 2 |

## I. 제안경위

2026년 6월 29일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공포·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 Ⅲ. 검토의견

#### 1.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용어 변경

#####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피해근로자등이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감정을 ‘성적 수치심’에서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 표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생략)                                                                                                                                                                         |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u>성적 수치심</u>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br>-----<br>-----<br>-----<br>-----.<br>-----<br>-----<br>-----<br>-----<br>-----<br><u>성적 불쾌감</u> -----<br>-----.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그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피해자가 반드시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을 느껴야만 피해자로 인정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으며, 피해자가 경험할 수 있는 분노, 공포,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sup>1)</sup>

특히, 성희롱 피해자가 사건이나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아니며, 불쾌감·모욕감·당혹감 등 다양한 감정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조사 과정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의 감정적 피해를 충분히 포섭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1) 2022년 3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등 용어 개정」을 권고안으로 발표하면서,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분노·비현실감·죄책감·무기력·수치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라고 지적하였음.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에게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sup>2)</sup>

[2019도16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中]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처럼 판례가 “성적 수치심”을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피해 감정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의 문언 자체가 피해자의 다양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현행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특정한 감정이나 반응을 요구하는 이른바 “피해자다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 성희롱 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감정적 피해를 보다 명확하게 법문에 반영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

2) 참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2023년부터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음.

는 취지로 볼 수 있음.

다만,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할 경우 다른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관련 용어와의 정합성 및 양자의 법적 의미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 체계에서 “성적 수치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대부업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성적 피해와 관련된 판단 기준을 위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또한, 상기한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피해자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있는바, 해당 용어는 일정한 법적 의미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만 “성적 불쾌감”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할 경우, “성적 수치심”과 “성적 불쾌감”의 개념 및 적용범위가 동일한 것인지, 또는 “성적 불쾌감”이 기존의 “성적 수치심”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별도의 판단기준을 갖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sup>3)</sup>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적 피해 상황에서 법률에 따라 서로 다른 용어가 사용될 경우 각 용어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별도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고용노동부는 용어 변경 실익, 용어 변경에 따른 법 적용범위 확대 가능성, 기존 판례 해석, 법률 간 용어 통일<sup>4)</sup>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
|--------------|
| 문 의 처        |
| 02)6788-5539 |

3) “불쾌감”은 일상적으로 불편함이나 거부감 등 비교적 광범위한 감정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개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치심”보다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4) 다수의 법률에서 ‘성적 수치심’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 해석상 혼란방지를 위해 일괄 정비하는 방안 검토 필요